



의안번호	제 2019 - 1호
의 결 연 월 일	2019. 1. 14. (제92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자문위원 연임 위촉	2
1. 개요	2
2. 진행경과	2
3. 자문위원 명단	3
III. 2019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4
IV.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해외 출장	6
1. 방문목적	6
2. 출장내용	7
3. 출장대상자	7
4. 세부일정	8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9
1. 개요	9
2. 관련규정	9
3. 의견수렴 계획	9
4. 시행일정	17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8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8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19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23차	2018. 12. 17. 14:00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 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집행유 예 기준)

II. 자문위원 연임 위촉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2. 진행경과

- 문채규, 윤영미 위원 2019. 1. 6.자로 각 임기만료
- 문채규, 윤영미 위원 2019. 1. 7.자로 각 연임위촉

3. 자문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경력
학 계	문 채 규	58. 03. 26.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영 미	63. 12. 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미 영	58. 03. 22.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 은 희	55. 07. 05.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고 학 수	67. 04. 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영 화	64. 04. 2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창 록	61. 05. 26.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대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고 문 현	60. 07. 28.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상 수	63. 03. 15.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영 민	53. 07. 2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계	김 세 형	56. 09. 18.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변 상 욱	59. 02. 07.	CBS 대기자
시민, 사회단체	김 자 혜	51. 11. 01.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신 혜 수	50. 06. 23.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최 은 순	66. 05. 18.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Ⅲ. 2019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가. 목표

- 2019. 1.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한 양형자료분석관 및 기존 양형자료 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을 대상으로 기존 양형자료분석관이 1:1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업무 이해도 제고
-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나. 교육기간 및 장소

(1) 교육기간

- 2019. 1. 7.(월) ~ 1. 10.(목) 3박 4일간

(2) 장소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충남 태안군 안면읍)

다.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라.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 : 양형자료분석관(17명)
- 교육 강사 : 운영지원단장 외 7명

마. 교육 내용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설명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프로그램 사용방법 실습

IV.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해외 출장

1. 방문 목적

가. 일본의 음주운전 범죄 양형실무 조사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2018. 11. 19. 양형연구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음주운전 등 주취범죄의 양형실태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법원의 실무를 조사하고, 양형 관련 정보를 수집
- 2018. 11. 27. 개최된 양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를 2019년도 제7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대상범죄로 우선 검토하는 안건을 양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11. 29. 국회에서 ‘운창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나. 일본의 심신미약 감경 실태 조사

- 국민적 관심이 높고, 2018. 11. 19. 양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일본 법원의 실무를 조사(일본 형법 제39조는 우리 형법 제10조와 동일하게 심신미약의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 2018. 11. 29. 국회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형기준의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 인자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짐

다. 명예훼손 등 양형실무 조사

- 현재 6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 중인 명예훼손 범죄 관련하여, 일본의 양형실무 및 양형관련 자료 수집
- 2019년 새롭게 출범할 7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범죄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형 관련 쟁점과 동향을 파악

라. 일본 법원의 양형심리절차 관련 정보 수집

- 구체적 양형심리절차 진행 방식
- 양형자료의 수집 및 법정 현출 절차

2. 출장 내용

- 출장기간, 방문기관
 - 기간 : 2018. 12. 18.(화) ~ 2018. 12. 22.(토) [4박 5일]
 - 국가 : 일본
- 방문기관 : 동경 지방재판소, 동경 고등재판소 등

3. 출장 대상자

직 위	성 명	경력	연수원	비 고
전문위원(법원)	손철우	수석전문위원(부장판사)	25기	
” (검찰)	김찬중	대검찰청 양형정책관(부장검사)	24기	
” (교수)	한상규	강원대 법전원 교수	24기	
”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형연구회(판사)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37기	대외 협력, 통역
양형위원회	이도행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34기	일정 관리 등

4. 세부일정

일 시	방문기관	내 용
12. 18.(화)	이동	·김포 출발(15:50 OZ1045) ⇒ 하네다 도착(17:55)
12. 19.(수)	동경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방문(09:50~12:10) ·정리 및 준비
12. 20.(목)	동경고등재판소	·도쿄고등재판소 방문(10:00~12:00) ·정리 및 준비
12. 21.(금)	소노오 타카시 변호사	·사무소 방문(10:00~1:30) 소노오 타카시 변호사(동경고등재판소 부장판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장 등 역임) 면담 및 오찬 ·정리 및 준비
12. 22.(토)	이동	·일본 연수법관·검사 면담 및 오찬 ·하네다출발(20:05 OZ1035) ⇒ 김포 도착(22:35)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양형기준안

- 제92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양형기준안(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나. 명예훼손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구기관	대 한 범 죄 학 회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6	연구기관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8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1		한국피해자학회	사무총장
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4		유관기관	대한법무사협회
25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6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27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31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32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3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3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6	시 민 단 체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7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3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39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0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1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2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7	행정부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10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방부	법무관리관
12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장	
14	연구기관	대한범죄학회	사무국장
15		한국교정학회	사무국장
16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17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1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2		한국피해자학회	사무총장
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5		유관기관	대한법무사협회
26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7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8	유 관 기 관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32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3		금 용 감 독 원	법무담당관
34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35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6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7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8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9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40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1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2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3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4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금 융 위 원 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15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16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8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9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20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21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2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사무총장	
24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5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6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7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8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9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33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4	금 용 감 독 원		법무담당관	
3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36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7	시 민 단 체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8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9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40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41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2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3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4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5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9. 1. 16.~ 2. 11.

○ 의견조회 취합 : 2019. 2. 11.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93차 회의(2019. 3. 11.) 시 보고 예정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 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8. 12. 4.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시 구급대원 폭력행위를 양형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시 구급대원 폭력행위를 양형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접수의견

순 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8. 11. 22.	○ 심신미약 판단에 법정신의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2	2018. 11. 29.	○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사기죄의 법적 처벌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3	2018. 12. 07.	○ 범죄 상황에 맞게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여 달라라는 내용
4	2018. 12. 12. 2018. 12. 13. 2018. 12. 20.	○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심신미약이 아닌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그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심신미약 판단에 법정신의학을 적용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계기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을 높였으며,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토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폭력범죄 등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 또한, 양형위원회에서는 2018. 11. 19. 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

구원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음주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심신미약’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양형위원회는 ‘감형’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강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를 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교통범죄에 있어서 그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소방청)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8. 12. 07.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구급대원 폭력행위를 양형인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방활동방해죄 양형기준 설정 ⇨ 현재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양형기준안 확정,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양형기준 최종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6기 양형위원회의 임기(2017. 4. ~ 2019. 4.) 중에는 신규설정이나 수정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규설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제7기 양형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설정·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귀청의 의견이 접수된 사정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수정(양형인자 명시) ⇨ 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는 ‘정의’를 통해 범죄의 특성상 나타나는 다양한 공무상 양태를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인자의 정의를 둔 취지와 일치하는 경우 가중인자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의규정에서 구조와 구급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

으나, 구조나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제28조), 소방기본법 제50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는 '구급'업무의 경우, '인명구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구급의 양형인자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귀청의 의견은 향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시점에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소방활동 방해는 국민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달라는 귀 기관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